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신설 2026. 10. 12.>

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 변경허가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
신청기관	기관명	전화번호
	기관장 성명	
	소재지	
	허가번호	전화번호
	책임자 성명	
	소재지	

변경 내용	항목	변경 전	변경 후	사유

「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기관장) (서명 또는 인)

질병관리청장 귀하

첨부서류		수수료
	1. 「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2.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없음

처리 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허가증 발급
신청인		처 리 기 관 (질병관리청)		처 리 기 관 (질병관리청)		처 리 기 관 (질병관리청)		처 리 기 관 (질병관리청)

210㎜ × 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